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9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 박충권 • 권영진 • 유상범

김승수 · 김선교 · 김위상

김성원 • 고동진 • 조지연

김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이하 "앱"이라 한다)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보편화·일반화되면서 앱을 유통하는 앱 마켓이 이용자와 앱 개발사를 연결하는 앱 생태계 전체의 관문으로 성장하였으며, 앱 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관련 생태계를 관장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부상하였음.

이에 따라 앱 마켓 시장의 유효경쟁 확보가 모바일 앱 생태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 정책 과제로 대두하였음. 우리나라는 2021년 인앱결제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유럽연합의 EU집행위원회도 디지털마켓법(Digital Market Act)에 합의하는 등모바일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법제도 수립이 가시화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도 앱 마켓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을 통한 매

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앱의 순위가 해당 앱의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앱 개발사는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 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앱 마켓 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다시 앱 마켓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다른 앱 마켓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한 혜택 제 공 등 시장경쟁 제한과 이에 따른 이용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나아가 일부 게임사업자들은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바일콘텐츠를 개발하여 매출액 기준 순위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함으로써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하여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 22조의11. 제27조제1항제3호의6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11(모바일콘텐츠 등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앱 마켓사업자 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앱 마켓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으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체결하는 협정서의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앱 마켓사업자의 협정서의 표준양식이 모바일콘텐츠 등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7조제1항에 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6. 제22조의11제2항에 따라 신고한 협정서의 표준양식과 다른 조건으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제공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를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의 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

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9까지"를 "제22조의9까지, 제22조의11" 로 한다.

제104조제3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2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서의 표준양식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2조의11(모바일콘텐츠 등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앱
	마켓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
	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으로 경
	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
	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체결하
	는 협정서의 표준양식을 마련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앱 마켓
	사업자의 협정서의 표준양식이
	모바일콘텐츠 등의 공정한 유
	통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u>수 있다.</u>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
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명령 등) ①
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난 한다.

1. ~ 3의5. (생 략) <신 설>

4. ~ 6. (생략) ② (생략)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 저 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 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1. ~ 3의5. (현행과 같음)
3의6. 제22조의11제2항에 따라
신고한 협정서의 표준양식과
다른 조건으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제공하
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50조(금지행위) ①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 11. (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 저 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 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 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

1. ~ 11. (현행과 같음)
12.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의 규모 및 시
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
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
여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
시하는 행위
②・③ (현행과 같음)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 한다.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 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 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 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 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 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 2조의8, 제33조부터 제35조까 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 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 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 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 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 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

1
<u>제22조의9까지, 제22조</u>
<u>의11</u>

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 3. (생략)
- ② ~ ⑤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의3. (생략) <신 설>
- 2. · 3. (생략)
- ④ ~ ⑥ (생 략)

- 2. · 3.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제104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 (3) -----
-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22조의11제2항을 위반 하여 협정서의 표준양식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 · 3. (현행과 같음)
- ④ ~ ⑥ (현행과 같음)